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도 근거 신설 등〉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56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12456)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도의 근거 신설(안 제34조 및 제135조)	4
2. 항공신체검사증명 등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검사 응시 제한 근거 신설 등(안 제43조)	17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221245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손명수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8. 28.
3. 회 부 일 : 2025.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항공기 운항 환경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항공법령·절차·기기 등이 도입됨에 따라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의 위기 대응 및 절차 이행 능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및 자격관리의 유효성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은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기량과 최근의 실무경험 요건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관련 종사자의 자격증명 유효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이에, 항공종사자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

제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의 갱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자격증명 시험 응시 및 항공신체검사 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는 과도한 처분을 우려한 응시자 또는 피검사가 본인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국제기구에서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처분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험 및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일률적으로 시험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자격증명 등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심사 또는 검사 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검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처분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가 자격증명을 갱신하도록하는 법적근

거와 효력의 정지 및 회복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34조제4항 등)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관제적성검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관제적성검사 응시를 제한하는 근거 신설(안 제43조제3항, 제

43조제4항)

-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및 항공신체검사, 관제적성검사에서 부정
한 행위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격증명
시험의 응시 및 신체검사를 제한하는 근거 신설(안 제43조제5항)
- 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업무의 위탁 근거 신설(안 제135조제5항)

Ⅲ. 검토의견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제도의 근거 신설(안 제34조 및 제 135조)

개정안은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갱신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자격증명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그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 ③ (생략) <u>④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u> <u>⑤ 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군복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자격증명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을 미리 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u> <u>⑥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u>

현행	개정안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생략)	경우 정지된 효력의 회복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1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갱신에 관한 업무
2. ~ 14. (생략)	2. ~ 14.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자격증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는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하는 면허의 일종으로, 자격증명의 종류는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등으로 구분되며¹⁾ 2025년 8월 기준으로 총 59,377개의 자격증명이 취득되었음.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득 현황 】

(25.8.31. 기준, 단위 : 명)

연도	조종사			항공 기관사*	항공 정비사	항공교통 관제사	운항 관리사	계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계	7,526	19,448	9,469	12	18,767	2,435	1,720	59,377
2000	291	267	24	0	241	85	12	920
2001	291	449	20	0	371	85	28	1,244
2002	176	408	46	0	438	59	34	1,161
2003	50	424	49	7	370	57	31	988
2004	37	381	32	0	502	95	24	1,071
2005	78	371	257	0	443	148	33	1,330

1)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5. 27.>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 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2006	314	445	340	1	362	105	28	1,595
2007	342	438	355	0	470	108	46	1,759
2008	317	375	386	0	601	86	73	1,838
2009	240	409	258	3	611	63	84	1,668
2010	261	307	364	1	516	46	58	1,553
2011	264	380	380	0	388	89	59	1,560
2012	361	600	391	0	497	73	86	2,008
2013	270	785	431	0	615	79	63	2,243
2014	306	869	492	0	709	87	62	2,525
2015	374	1,016	601	0	828	81	70	2,970
2016	437	1,228	581	0	945	101	89	3,381
2017	404	1,462	573	0	1,290	139	85	3,953
2018	390	1,560	550	0	1,142	83	87	3,812
2019	523	1,729	538	0	1,267	99	120	4,276
2020	353	1,052	501	0	1,258	98	96	3,358
2021	261	895	494	0	1,684	131	75	3,540
2022	208	766	431	0	1,133	112	104	2,754
2023	267	1,010	493	0	778	115	86	2,749
2024	370	1,120	515	0	772	120	96	2,993
2025	341	702	367	0	536	91	91	2,128

※ 자료 : 국토교통부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²⁾,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함.³⁾

2) 「항공안전법」

제36조(업무범위)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새로운 종류, 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항공안전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은 다른 면허제도와 달리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 없이 영구적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일정 기간 이내의 실무경험 요건이나 교육훈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격증명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어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 보장 및 자격관리의 유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및 최근경험 요건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현행 「항공안전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의 유효기간과 갱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격증명의 유효성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자격 취득 후 항공종사자들의 기량과 실무 경험 등을 주기적으로 입증하여 자격증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격증명의 갱신에 관한 국제기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EASA)
ICAO 부속서1 1.2.5. Validity of Licences) 체약국은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 보유자가 기량(competency) 유지 요건과, 최근 실무경험 요건(recent experience requirements)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의 효력이 유효하지 못하도록 확인·관리하여야 함		-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에서는 Easy Access Rules for Flight Crew Licencing(Part-FCL) 등 관련 법령에서 자격증명과 한정 등 유효성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량 및 최근 경험 요건과 자격증명 유효성 확인을 위한 항공당국자의 점검 및 자격증명 갱신 등을 규정함 - 자격증명 및 한정 유효성 확인을 위해 항공당국이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 및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조종사 한정에 대한 유효기간과 갱신 및 회복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조항	내용	내용
ICAO ANNEX 1 1.2.5.1	A Contracting State, having issued a licence, shall ensure that the privileges granted by that licence, or by related ratings, are not exercised unless the holder maintains competency and meets the requirements for recent experience established by that State.	(조종사>최근 경험 요건>승객수송) Easy Access Rules for Flight Crew Licencing FCL.060(Recent experience)의 (b)에 따라, 상업운송 또는 승객운송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장 또는 부기장은 다음의 최근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최근 90일 이내, 동일한 형식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서 3회 이상의 이착륙 및 접근 절차를 수행해야 함 - 야간 비행 시: 야간에 비행을 수행하려는 경우, 최근 90일 이내에 야간에 동일한 형식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서 최소 1회의 이착륙 및 접근 절차를 수행했거나, 계기비행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조종사>한정>유효기간) Easy Access Rules for Flight Crew Licencing FCL.740(Validity and renewal of class and type ratings)의 (a)에 따라, 등급 및 형식 한정 유효기간은 1년, 단일 조종사·단발기 한정인 경우 유효기간은 2년임

다만, 다음과 같이 자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갱신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4조제4항은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자격증명의 갱신 의무만을 두면서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갱신기간’의 의미와 자격증명의 효력이 미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법안 취지상 ‘3년 이상의 갱신기간’은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므로 아래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통수단의 면허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선박직원법」, 「도선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면허 취득자로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갱신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자격증명의 효력 및 갱신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3년 이상)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항공종사자들의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유사 입법례 】

철도안전법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① <u>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u>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u>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u>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u>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u>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선박직원법	제7조(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u>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u>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u>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u>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u>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u>

	<u>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u>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도선법	제6조의2(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u>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u>은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u>유효기간 만료 전에</u>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u>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u> 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④ 제3항에 따라 <u>도선사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도선사면허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u>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둘째, 안 제34조제4항에서 자격증명을 언제까지 갱신하여야 하는지 갱신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안 제34조제6항에서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의 효력이 언제부터 정지되는지 정지 시점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안 제34조제6항은 미갱신 시 자격증명의 효력은 정지된다고 규정하면서 정지된 효력의 회복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정지된 효력의 회복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와 같이 하위법령 위임규정만 두고 있음.

정지된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갱신절차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격증명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여야 한다”와 같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정리하면,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을 명확히 ‘N년’으로 규정하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

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자격증명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받아야 한다고 갱신기한을 규정하는 한편,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명의 효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명확히 하고, 자격증명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격증명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도록 하는 등 효력회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넷째, 개정안은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안 제135조⁴⁾**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갱신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므로 **제34조의 개정규정과 시행일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개정안은 부칙 적용례를 두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자격증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⁵⁾ 신법에서 구법에는 없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서 구법 질서에 대한 수범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며,**

4)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갱신에 관한 업무

5) 부칙 제2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효한 자격증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히 기존에 자격증명을 취득한 항공종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경 제도에 대한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시행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증명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내에 변경 제도에 따라 갱신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유효한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일정 유예기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증명을 갱신하도록 하여 **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를 함께 둘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항공협회**에서는 자격증명 갱신제도 도입 추진 시 항공업계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 및 공감대 형성 후에 도입이 필요하며, 기존 자격증명보유자의 연착륙을 위해 갱신제도 도입 시 기존 보유자에 대해 최소 3년의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나.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갱신제도 도입에 동의함.

2) 한국항공협회 의견

최근 경험 요건과 사내교육·훈련 이수여부를 통하여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며, 기존 국토교통부 인가 교육 및 훈련에 의거하여 항공종사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토교통부 인가 관리 체계 외 갱신제도 신설 시 행정적 부담 및 항공업계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국가 정책 등 대내외 여건 등에 따른 자격증명 갱신제도 도입 추진 시 항공업계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 및 공감대 형성 후에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자격증명보유자의 연착륙을 위해 갱신제도 도입 시 기존 보유자에 대해 최소 3년의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명확히 조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⁶⁾

6) 항공사와 정비조직 소속 정비 실무종사자는 국토부 인가 프로그램에 따른 정기교육이수 대상자로, 현업 종사자의 자격 유지 및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내 자격증명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항공신체검사증명 등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 근거 신설 등(안 제43조)

개정안은 ① 항공신체검사증명 및 관제적성검사 합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응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② 기존에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2년간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응시제한 기간을 차등할 수 있도록 ‘2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응시제한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u>취소하여야 한다.</u> 1. ~ 7. (생략)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취소하여야 하며,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u> 1.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 합격을 <u>취소하여야 한다.</u>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u>2년간</u>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⑥ (생략)	④ ----- ----- ----- ----- <u>취소하여야 하</u> <u>며,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u> <u>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u>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u> <u>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u> ⑤ ----- ----- ----- ----- ----- ----- ----- <u>2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u> <u>로 정하는 기간 동안</u> ----- ----- -----. ⑥ (현행과 같음)

가. 검토의견

1) 항공신체검사증명 등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 근거 신설(안 제43조제3항 및 제4항)

현행법 제43조는 항공종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 등을 받은 경우 등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자격증명 등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기 조종 등 해당 자격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⁷⁾

7)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계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6.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6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 6의3.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3호, 제14호 및 제16호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8의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8의3.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10.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11.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12.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4.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5의2.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6.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7.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63조를 위반하여 조종사가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9.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20.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21.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22.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3.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4.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2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6.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27.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28.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9. 제90조제4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1. 제38조의2 및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효력정지의 대상으로 운송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부조종사 및 사업용·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포함하고, 사업용 조종사에 대해서는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포함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를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 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 합격을 받은 후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검사 응시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시험 응시를 제한함으로써 자격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이며, 의무 위반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자격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규정한 「항공안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면허시험 규정을 두고 있는 다수의 유사 입법례에서도 면허취소자에 대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시험 응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 5.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7.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그 관제적성검사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면허취소자에 대한 시험 응시제한 입법례 】

「철도안전법」 운전면허시험	제17조(운전면허시험) ② <u>운전면허시험은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u>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 제11조제1항제5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철도안전법」 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8(관제자격증명시험) ② 관제자격증명시험은 제2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u>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u> 제21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와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제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 제11조제1항제5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선박직원법」 해기사 면허시험	제5조(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한다. *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운전면허시험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③ <u>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u>*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수상레저안전법」 조종면허시험	제8조(면허시험)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u>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u>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도선법」 도선사 시험	제15조(시험) ② 도선사 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u>제6조의 결격사유*</u>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기타	기타 일반적인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시험응시자격 제한을 두고 있음(세무사,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거나 관제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대해 법률에 시험응시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다른 입법례와 달리, ‘2년의 범위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2년을 상한으로 두고 제한기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시험 중 부정행위자와 같이 부정행위의 경중이 존재하는 경우와 달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받은 것은 위반사유나 정도에 따라 제한기간의 차등을 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는 검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타법의 자격제도와 운영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의 시험응시 제한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43조제3항 단서는 “제1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항공신체검사 증명이 취소된 경우에만 검사 응시를 제한하려는 것인데, 취소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항에 따라 주요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증명이 취소되는 경우⁸⁾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검사 등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부칙 시행일과 관련하여, 관제적성검사 신설에 따라 개정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981호)은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2028.5.28.에 시행 예정이므로,⁹⁾ 안 제43조 중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2028.5.28.에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음.

8)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2. 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음주 등 금지의무 위반)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5.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7.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9) 부 칙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2, 제43조(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44조제4항, 제45조제6항, 제134조제9호, 제136조제1항(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정행위자의 응시제한 기간의 차등 적용 근거 신설(안 제43조 제3항 및 제4항)

현행법 제43조제5항은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시험이나 검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⁰⁾

개정안은 2년간 일률적으로 시험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발생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처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처벌 정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¹¹⁾¹²⁾

10)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1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평가 세부항목 중 신체검사 부정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따르면, 의학검사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면허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단계적 대응 체계** 등 효과적인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신체검사 부정행위 단계적 처분 관련 】

No.	Protocol Question	Guidance for Review of Evidence	ICAO References	CE
3.409	지정된 의학검사관(DME)에게 허위 진술을 한 지원자에 대해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를 마련했습니까?	1)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절차를 검토한다. 2) 단계적 대응 체계(경고나 제재 등) 의 보고서 및 증빙 등 효과적인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검토한다.	STD Annex 1 1.2.4.7.1	CE-8

다만, 개정안의 제안이유¹³⁾에 따르면 ‘2회 이상 부정행위자’를 전제로 위반 횟수에 따라 응시 제한 기간을 달리 두려는 취지로 보이나, 부정행위의 반복 횟수 외에도 그 경중을 달리 볼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한 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응시에 제한을 두는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거나 응시자격의 정지 없이 당해 시험만 무효

No.	Protocol Question	Guidance for Review of Evidence	ICAO References	CE
	Has the State established the appropriate actions to be taken in case of a false declaration by an applicant to a designated medical examiner (DME)?	1) Review procedures outlining actions to be taken. 2) Review evidence to confirm effective implementation, i.e. reports and evidence of a graduated response system (warnings, sanctions, etc. that have been issued).		

Annex 1 Personnel Licensing

1.2.4 Medical fitness

1.2.4.7.1

자격증명 또는 등급의 신청자가 의학검사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은 발급국의 면허당국(Licensing Authority)에 보고되어야 하며, 면허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4.7.1 Any false declaration to a medical examiner made by an applicant for a licence or rating shall be reported to the Licensing Authority of the issuing State for such action as may be considered appropriate.

12) 대전지방법원 2016.9.8. 선고 2016구합101968 판결

유사한 취지에서 모법의 위임 없이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내용, 동기 및 그 결과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과 동시에 향후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행정규칙은 경미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위반의 정도나 정상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제재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음.

13) 이에, 자격증명 등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계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심사 또는 검사 시 발생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검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처분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로 하고 있는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와 같이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음. 다만,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통신기기로 의사소통하는 행위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한편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의료법」, 「간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의료종사자격 시험은 위반행위의 사유와 위반 정도에 따라 응시제한의 횟수를 1~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박직원법」도 부정행위의 유형, 내용, 동기 및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 이내의 응시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차등적 근거를 두고 있음.

【 부정행위의 위반 정도, 유형에 따라 응시제한 기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 입법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¹⁴⁾ - 중대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 무효, 5년간 응시자격 정지 ※ 다른 수험지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대리시험 응시, 통신기기 사용, 부정한 자료 이용 등 - 경미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 무효 ※ 시험 시작 전 문제열람,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행위 등
의료법, 간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응시자격의 제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예) 시험 중에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2회/ 대리시험을 치르는 행위 : 3회
선박직원법	제5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u>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u>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9조(부정한 행위의 유형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u>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1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 2. 12., 2014. 10. 8., 2014. 11. 19.>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나. 국토교통부 의견

항공자격증명 시험, 항공신체검사 등에서 부정행위 시 해당 증명의 취소 처분에 더해 재응시(검사)를 일률적으로(2년) 제한하는 현행 처분 기준의 세분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재응시 제한 기간을 차등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제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580